

2009년도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

〈본회 기획팀〉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이 금년에는 사료협회의 주관하에 지난 5월 14, 15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본회 조남조 회장은 “세계 사료곡물가격과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품질의 안전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시 되는 만큼 이번 교육은 시기적절하다”며 “이번 교육이 업계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와 아울러 교육당시 뜨거운 관심사였던 사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사료내 항생제 사용제한에 따른 대처방안 및 사료공장 HACCP관리제도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사료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註>



▲ 축사를 하고 있는 조남조 회장



□ 주 제 : 2009년도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9. 5. 14(목) 13:00 ~ 5.15(금) 11:30
- 장 소 : 춘천 라데나리조트

□ 참석자 : 담당 공무원 및 사료제조업체 종사자 150명

□ 교육일정표

일 시	교 육 내 용	강 사 명	
5.14 (목)	13:00~13:20	• 등 록	
	13:20~13:30	• 개회사 / 축사	농식품부, 한국사료협회
	13:30~14:50	• 사료 품질 및 위생·안전성 관리제도 설명	농식품부(축산경영과)
	14:50~15:00	• 휴 식	
	15:00~15:50	•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분석 적용	박 장 희 소장 (한국사료협회)
	15:50~16:00	• 휴 식	
	16:00~16:50	• 사료내 항생제 사용제한에 따른 대처방안	김 유 용 교수 (서울대학교)
	16:50~17:00	• 휴 식	
	17:00~17:50	• BSE차단을 위한 동물성단백질사료 이용 및 안전성 제고방안	정 완 태 박사 (국립축산과학원)
5.15 (금)	09:00~09:50	• DDGS등 바이오연료 부산물의 사료화 개발	김 인 호 교수 (단국대학교)
	09:50~10:00	• 휴 식	
	10:00~10:50	• 사료공장 HACCP관리제도 및 중점관리사항	박 희 옥 팀장 (축산물HACCP기준원)
	10:50~11:30	• 정책제안 및 대토론회(질의 응답)	발표자 및 참석자
	11:30	• 교육종료	

1.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관리제도 설명 교육요약

- 새로 개정된 사료관리법 하위법령 -

□ 사료관리법 시행령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제4조)
 -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함
 - 담당기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원, 기준 준수 여부 등 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를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제5조, 제6조)



안 규 정
농림수산물부 사무관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규제완화(제6조 별표 1내지 3)
- 사료제조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설(제7조 제3항, 제8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 교육·훈련 등 신설(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물질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을 사용 하도록 함(제30조 제2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제38조)

□ 사료관리법 관련 고시

① 사료공정서 고시

-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1종), 효소제(2종), 생균제(6종), 완충제(1종)을 추가하고, 효모제를 유익효모제로 변경하는 등 생균제 종류의 일부 용어를 변경(제6조 별표3)
- 단미사료·보조사료의 사료공정 중 일반시험법의 생균제 정량법을 일부 추가하고, 기타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제7조 제1항 별표4, 제4조제3호 및 제6조제3호)

② 사료검사요령

- 살모넬라 D그룹 검사 등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멸균된 채취용기를 사용하거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료의 채취요령 강화(제10조 제2항 제6호)
- 사료검사기관에서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할 때 전산관리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등록성분 검정의뢰 시 생균제와 비타민제만 성분함량 표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아미노산류, 향미제, 보존제, 칼슘까지 주요 성분함량 표시 확대(제13조 제5항, 제6항)
- 시료의 처리 및 검정결과 통보를 의뢰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일 이내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안전성 관련 성분 함량 초과시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즉시 보고 및 통보(제31조 제1항)

③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 유해사료의 정의를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사료사용 제한물질이 혼입되어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사료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
- 제6조 제3항, 제4항은 남은음식물사료, 동물성사료 관련된 사료공정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사료공정서에 신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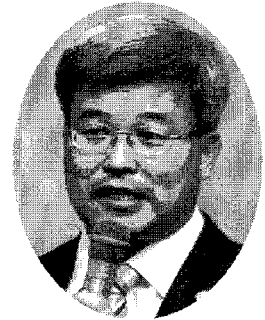
④ 수입사료 사후관리 요령

- 수입사료 사후관리대상 중 제조업자를 사료제조업자로 명확히 하고,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제4조 제2호, 제10조 및 제14조)

⑤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사료공장의 HACCP 담당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변경하고, HACCP적용사료공장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 평가방법 신설(제9조 제10항)

2. 사료내 항생제 사용제한에 따른 대처방안



김 유 용
서울대학교 교수,
본회 R&D위원

□ 국내의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

-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맹목적인 무항생제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으나 100% 항생제를 대체하는 신물질은 없으며, 일부 축수산물 농가에서 오남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즉, 일부 축수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복합항생제(카테일항생제) 처방과 자가진단으로 인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단체에서 축수산물의 항생제 오남용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 카테일 항생제와 단일 항생제의 효능에서의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유기축산의 경우에도 항생제를 치료목적으로 1회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나 다량으로 1회 투여하는 유기축산과 소량으로 여러회 투여하는 비유기축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으며 치료용 항생제의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항생제 사용 절감 방안

- 배합사료내에 성장촉진용 항생물질 사용은 억제되는 추세임
 - 53종 → 25종(2005.5.1)
 - 25종 → 18종(2009.1.1)
- 사료용 항생제의 대체제로서는 산제(acidifier), 생균제(probiotics), 식물추출물(죽초, 목초액), 기타 광물질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항생제대체제를 이용한 무항생제 사양시 항생제 사양보다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

- 또한 비육돈 사양에는 절대로 항생제를 첨가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All in-all out은 물론 밀사(특히 자돈밀사)를 통한 사양지양과 자돈의 이유일령을 높여 조기이유에 따른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려는 노력이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무항생제 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종합결론

- 현재까지 완전한 항생제 대체물질은 없음.
- 항생제 대체물질의 이용시 생물학적 특성 및 기능의 이해가 필수적임.
-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항생제 저감이 가능
 -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마련이 우선
 - 동물사양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
 - 농장의 차단방역(생물학적 안전성) : 질병치료보다 차단을 통한 예방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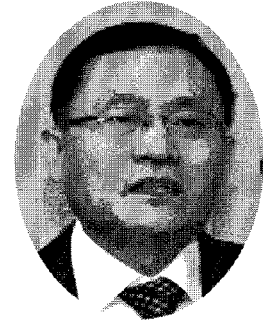


▲ 교육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3. 사료공장 HACCP 관리제도 및 중점관리 사항

□ 사료공장 HACCP 지정현황(2009. 5월 현재)

단체별	회사수	공장수	지정	지정율
사료협회	40	61	51	84%
농축협	14	22	22	100%
기타	12	11	3	17%
계	66	94	76	81%



박 희 옥
축산물HACCP기준원 팀장

□ HACCP 실시상황평가표

구분/항목	평 가 내 용	비 고
사료공장관리	9개항	경결함 9개항
제조시설관리	15개항	중결함 1개항, 경결함 14개항
제조공정관리	9개항	중결함 4개항, 경결함 5개항
위생기준	4개항	경결함 4개항
방역관리	5개항	경결함 5개항
개인위생 및 근무자 안전	4개항	경결함 4개항
보관 및 반·출입	8개항	경결함 8개항
운반관리	2개항	경결함 2개항
검사시설	2개항	경결함 2개항
검사기준 등	3개항	경결함 3개항
제품회수절차	1개항	경결함 1개항
위해분석	5개항	중결함 2개항, 경결함 3개항
중요관리점	6개항	중결함 6개항
검증 및 기록	4개항	중결함 1개항, 경결함 3개항
계	77개항	

□ HACCP 실시상황평가표 판정기준

종합평가는 중결함 해당항목 중 × 판정이 1개 이상이거나 경결함 해당항목 중 × 판정이 6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경결함 해당항목 중 × 판정이 5개 이하인 경우 수정보완토록 한다.

□ 사료공장 HACCP적용 향후 방향

- 지속적인 유지관리
- 예방정비 및 제조공정 설비개선
- Risk의 Zero에 의한 HACCP 최적화
- HACCP의 생활화